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에 3년을 주기로 통관취급법인등의 시설·장비 등록요건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기한을 유지할 만한 실익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보조자’라는 용어를 ‘사무직원’으로, ‘관세사회’의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3. ~ 3.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직무보조자의 채용등)”을 “(사무직원의 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보조자를”을 “사무직원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등 록
관세사
[] 등록갱신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사무소명	사무소소재지		
관세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자격증번호	전화	
	①자격취득년도 (자격취득구분) []일반 []관세행정경력	②공직퇴임 관세사 여부	(여, 부) ※ 퇴임 시 직급 :
③등록번호	④등록(갱신)기간		

「관세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사

☐ [] 등록 ☐ 을 신청합니다.
☐ [] 등록갱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관세사회장 귀하

작성 방법

- ①: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연도를 적되,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관세사 시험 제1차시험 전과목 또는 제2차시험 일부과목을 면제받은 사람은 관세행정경력에 표시하고 그 밖의 사람은 일반에 표시합니다.
- ②: 공직퇴임관세사란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를 의미하고, 퇴임 시 직급에는 퇴임 당시 직급(예시: 5급)을 적습니다.
- ③·④: 등록갱신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관세법인 [] 등 록
[] 등록갱신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법인의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소재지				
관세사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등록번호		
	주소	관할 세관		
재산상황				
등록(갱신)기간				

「관세사법」 제17조의2, 제17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5에 따라 관세법인

☐ [] 등록 ☐ 을 신청합니다.
☐ [] 등록갱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관세사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사본 2. 소속된 관세사의 관세사 등록증 사본 3.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예정지가 적힌 서류	수수료 없음
-------------	---	-----------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관세사회장 직인

제 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	-----	---	-----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관세사회

(뒤쪽)

관세사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등록번호
	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등록번호
	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등록번호
	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등록번호
	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등록번호
	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등록번호
	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등록번호
	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등록번호
	주소	관할 세관
관세사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등록번호
	주소	관할 세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직무보조자의 채용등) ① 삭 제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u>직무보조자</u> 를 둘 수 있다.	제4조(사무직원의 채용등) ② ----- ----- ----- ----- <u>사무</u> <u>직원</u> 을 -----.
제5조(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법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법 제21조에 따른 <u>관세사회</u>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① ----- ----- ----- ----- ----- ----- <u>한국관세사회</u> -----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